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248

발의연월일 : 2026. 6. 15.

발 의 자 : 엄태영・안철수・김상훈
김태호・윤한홍・이종배
박성민・이종욱・이만희
권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최초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3년간 해당 주택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초기 분양금 마련이 곤란한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장기간에 걸쳐 소유권을 분할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구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의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

31조제8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8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⑦ (생 략) ⑧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하 이 항에서 “지분적립형주택”이라 한다)으로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적립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 ---------- ---------- ---------- ----2029년 12월 31일-------- ---------- ---------- ---------- ---------- ---------- ---------- ---------- ----. ---------- ---------- ---------- -----.